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요건 강화 >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620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요건 강화	2
※ 참고자료	8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8

I. 제안경위

2025년 3월 4일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3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종류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에서 방향제의 경우에는 제품이 연소될 때에 발생하는 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며,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판매되는 연소형 방향제 등의 연소 과정에서 벤젠 등의 유해물질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농도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에 제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 발생하여서는 아니 되는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의 발생량에 관한 허용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요건 강화

개정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별 안전기준에 제품의 연소·합성·분해 시 ①발생하면 아니되는 화학물질 및 ②발생하는 화학물질의 발생량에 관한 기준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3호·제4호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① (생략) ② 안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략) <u><신설></u> <u><신설></u> 3.·4. (생략)	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3. <u>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 발생하면 아니 되는 화학물질</u> 4. <u>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 발생하는 화학물질의 발생량에 관한 허용기준</u> 5.·6.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성 평가에서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기준¹⁾을 정하여 고시하고(제9조)²⁾, 제조·수입하려는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관련 정보를 한글로 표시³⁾하도록 하는 등(제10조)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규제 기준을 두고 있음.

1) (안전기준) 소비자의 제품 사용·보관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사전 방지를 위하여 세 기준으로 분류하여 안전기준 설정

- ①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②용기 및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③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 안전기준 예시 >

구분	함유금지물질	함유물질 함량기준	사용물질 함량기준
세탁세제	염화비닐 등 6종	전인산업	머스크 케톤 등 18종
섬유유연제	벤젠 등 12종	폼알데하이드(전 제형 75 mg/kg 이하) 등 14종	개미산(전 제형 10 % 이하) 등 10종

2) 법 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종류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기준을 고시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안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으면 아니 되는 화학물질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에 관한 기준
3. 용기·포장 또는 그 내용물의 누출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그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기준(어린이, 임산부 등 해당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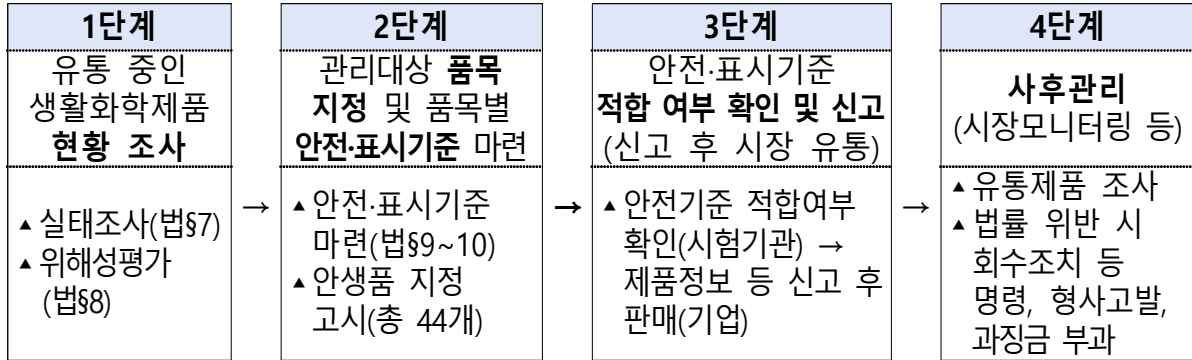
3) (표시기준) 국내 판매 시 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제품명, 용도 및 제형, 성분 정보, 사용상 주의사항, 신고 번호 등 표시사항 기재

- 마크 표시(의무) 및 사용상 주의사항에 대한 그림기호 표시(권장) 도입

안전기준 확인 마크		사용상 주의사항 그림기호(예시)	
			
유색	단색	내용물이 눈에 닿지 않도록 하시오.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4) 법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



자료: 환경부

그런데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서 실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별 시험⁵⁾에서, 인센스 스틱과 향초 중 일부 제품의 연소 후 공기에서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는 제품정보·성분 및 함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⑥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⑧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로 표시(이하 “표시기준”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2.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중량 또는 용량
 5.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6.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7.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8.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⑨ 제1항에 따른 확인, 제4항에 따른 신고,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제6항에 따른 승인, 제7항에 따른 변경승인·변경신고 및 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인센스 스틱*) 10개 제품 중 5개가 연소 후 공기에서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30 $\mu\text{g}/\text{m}^3$)을 초과하는 벤젠 검출(33~186 $\mu\text{g}/\text{m}^3$)

벤젠·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
었음.

이에 개정안은 기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불을 붙여 연소시
키는 등 연소·합성·분해 과정에서 발생하여서는 아니 되는 화학물질과
발생하는 화학물질의 발생량에 관한 허용기준을 안전기준에 포함하도
록 법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사용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화학물질
이 호흡기로 흡입되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도 안전기
준을 마련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연
소·합성·분해될 때 발생하면 아니되는 화학물질 및 발생하는 화학물질
의 발생량에 관한 허용기준’은 현행법 제9조제2항제2호6)에서 既규정하
고 있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에 관한 기준’에 포함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환
경부장관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 고

* 숯, 향료 등으로 만들어 연소시 향이 있는 연기를 방출하는 제품
(향초) 10개 제품 중 3개가 연소 후 공기에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500 $\mu\text{g}/\text{m}^3$)을 초과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552~2,803 $\mu\text{g}/\text{m}^3$)

- 6) 법 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종류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기준을 고시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안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으면 아니 되는 화학물질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에 관한 기준
 3. 용기·포장 또는 그 내용물의 누출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그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기준(어린이,
임산부 등 해당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를 통해 각 품목별로 보다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⁷⁾⁸⁾.

[현행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법 제9조제2항제1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으면 아니 되는 화학물질
법 제9조제2항제2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에 관한 기준
법 제9조제2항제3호	용기·포장 또는 그 내용물의 누출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그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기준(어린이, 임산부 등 해당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법 제9조제2항제4호	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환경부는 2019년 방향제 및 향초에는 벤젠이 함유되지 못하도록 환경부고시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을 개정⁹⁾하였고, 인센스 스틱·향초를 연소시켰을 때 생성되는 물질에 대한 2019년 위해성 평가¹⁰⁾ 및 2023년 위해성 재평가¹¹⁾를 실시하여 이

7) 환경부는 2025년 중 고시를 개정하여 연소형 방향제에 대한 사용 후 환기 관련 표시사항 문구를 추가할 예정임(환경부)

구분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방향제(연소형 제품에 한함), 초(방향용에 한함)	- (사용 중)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을 주의하고, 직접 연기를 흡입하지 마시오. - (사용 후) 잔여 불씨가 없는지 확인하고, 환기를 충분히 하시오. - (보관 시) 주위에 화기 또는 열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시오.

8)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및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에서는 품목별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은 법률을 개정하여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현행 환경부 고시에서 제품별 특성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관리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9) 30mg/kg 이하(舊 위해우려제품 고시) → 함유금지(검출허용한도 5 mg/kg 이하)

10) (‘19.3~‘20.2) 위해성평가 연구 결과, 인센스 스틱의 연소 후 벤젠 및 향초의 휘발성유기화학물질의 방출량*은 미량으로 위해 수준 미미

* △인센스 스틱 : 벤젠(0.0002~0.008 $\mu\text{g}/\text{m}^3$), △향초 : 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불검출)·폼알데하이드(0.0002 $\mu\text{g}/\text{m}^3$)·아크롤레인(0.0005 $\mu\text{g}/\text{m}^3$), 아세트알데히드(0.00007 $\mu\text{g}/\text{m}^3$)

전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실시하였던 시험 결과에 대한 보완 절차를 완료하였음.

참고로, 인센스 스틱 등 연소형 방향제에 관하여 독일·미국 등은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별도의 안전규제를 두고 있지 않으며, 영국의 경우 제품 사용 시·사용 후의 실내 환기, 연기 직접 흡입 금지 등 예방조치의 표시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536

-
- 11) ('23.3~'23.11) 인센스 스틱, 향초 등에 대한 연소생성물의 방출량 위해성 재평가 결과, 모든 물질이 허용위해수준 이내로 평가됨
- 다만, 연소형 방향제의 연소생성물은 연소 후 적절한 환기를 통해 현저히 감소된다는 결과를 토대로, 환기 표시 제안

※ 참고자료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¹²⁾의 종류

분류	품목
제1부 세정제 품	1. 세정제 2. 제거제
제2부 세탁제 품	1. 세탁세제 2. 표백제 3. 섬유유연제
제3부 코팅제 품	1. 광택코팅제 2. 특수목적코팅제 3. 녹 방지제 4. 윤활제 5. 다림질보조제 6. 마감제 7. 경화제
제4부 접착·접합제 품	1. 접착제 2. 접합제 3. 경화촉진제
제5부 방향·탈취제 품	1. 방향제 2. 탈취제
제6부 염색·도색제 품	1. 물체 염색제 2. 물체 도색제
제7부 자동차 전용 제 품	1. 자동차용 워셔액 2. 자동차용 부동액
제8부 인쇄 및 문서관련 제 품	1. 인쇄용 잉크·토너 2. 인주 3.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제9부 미용제 품	1. 미용 접착제 2. 문신용 염료
제10부 여가용품 관리제 품	1.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제11부 살균제 품	1. 살균제 2. 살조제 3.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4.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1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1](환경부고시 제2024-139호, 2024.7.15.)

분류	품목
제12부 구제제품	1. 기피제 2. 보건용 살충제 3. 보건용 기피제 4.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5.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제13부 보존·보존처리제품	1. 목재용 보존제 2.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제14부 기타	1. 초 2. 습기제거제 3. 인공 눈 스프레이 4. 공연용 포그액 5.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6.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